

한국여성수리과학회 정관

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학회는 한국여성수리과학회라고 한다. 이하 본 학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여성수리과학자의 학문적 발전과 활발한 교류 및 여성수리과학자들의 저변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수리과학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여성수학자의 평등적 활용 지원
2. 여성수학자의 연구 활동 및 교류 지원
3. 여성수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 증진
4. 수학에 관한 자료수집 및 연구서 발간
5. 전문지식을 이용한 사회봉사(수리과학의 대중화)
6. 기타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1. 본 학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학회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않는다.

제 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구성)

① 본 학회의 회원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수학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여성
2. 학생회원 : 수학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부 및 대학원 학생으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
3. 특별회원 :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
4. 명예회원 : 본 학회 또는 수리과학계에 공헌이 큰 사람

② 학생회원과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은 성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7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본 학회가 개최하는 학술적 회합에 참가할 수 있다.

- ② 회원은 본 학회가 간행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 ③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한다.
- ④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8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매 연도마다 연회비를 납부하고, 정관과 본 학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회원의 상벌)

- ①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가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②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되는 행위 및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가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또는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자격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
2. 임의 탈퇴
3. 제9조 2항에 의한 제명

제 3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 본 학회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수석부회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
 3. 이사: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20인 이내
 4. 감사: 2인
- ② 회장, 부회장, 이사는 민법상의 이사가 된다.

제12조 (고문 및 자문위원)

1. 이사회가 결의에 의하여 필요한 수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으며 회장은 회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자문위원을 소집할 수 있다.
3. 고문 및 자문위원은 성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1.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선임방법)

본 학회의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출한다.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며 총회에서 인준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5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 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 자, 한정치산 자 또는 파산자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는 자.

제16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이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2. 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3.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기획하고 처리한다.

제17조 (회장의 직무대행의 지명)

1. 회장이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가 부회장들 중에서 회장의 직무 대행자를 선출한다.
3. 제 2항의 규정에 의해 직무대행자를 선출하는 경우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 아래 재적이사 과반수 참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에 대하여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 4장 총 회

제19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본 재산 취득 및 처분
7. 기타 중요사항

제21조 (총회의소집)

1. 정기 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회장이 소집한다.
3.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회의의 목적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총회는 제 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2조 (총회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단, 서면 위임자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3조 (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 18조 제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의 3분의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 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4조 (총회의결 제적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본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장 이 사 회

제25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본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26조 (의결 정족수 등)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여야 개최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7조 (이사회 소집)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정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소집한다.
3. 회장은 이사회 소집 7일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 18조 4항에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후에도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 2항에 의한 이사회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서면결의)

1.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 결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 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3분의 1이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할 시는 이사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 6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 (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 (재산의 구분)

1. 본 학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1) 설립 시 기본 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 2) 보통 재산 중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제32조 (재산의 관리)

1. 제32조 제2항의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본 학회가 매매,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기본 재산 및 보통 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 1항 및 제 2항 제외)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4. 기본 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3조 (재산의 평가)

본 학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 액으로 한다.

제34조 (경비 조달 방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입회금 및 회비
2. 보조금
3. 기부금
4. 위의 제1, 제2, 제3호의 수입금에서 발생한 이자
5. 기타의 수입

제35조 (회계의 구분)

1. 본 학회의 회계는 목적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2. 제 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3. 제 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 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법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6조 (예, 결산 집행 및 보고)

1. 예산 및 사업회계의 집행권은 회장이 가진다.
2. 매년도 사업계획과 수지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서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내 감독청에 보고하여야한다.
3. 매 년도 사업 실적과 수지 결산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종료 후 2 개월 전까지 제출하고 차기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

제37조 (업무 및 회계 감사)

1. 수지 결산서에서는 업무 현황과 재산 목록 및 감사 결과 보고서가 첨부되어야한다.
2. 회장은 회계연도 말에 일반 회계 결산보고서와 기금관리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38조 (예산 외의 채무 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1. 본 학회의 재산은 본 학회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1) 본 학회의 출연자
 - 2) 본 학회의 임원
 - 3) 제 1호 및 제 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4) 본 학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제 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본 학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7장 사업 및 기구

제40조 (학술대회)

본 학회는 연 2회 이상 연구 발표회를 가지며 연구 발표에 관한 결정은 이사회에서 한다.

제 41조 (기타 사업)

본 학회는 목적에 관련되는 다음의 정기 부정기의 각종 사업을 하며 이에 관한 결정은

이사회에서 한다.

1. 부정기 연구 발표회 개최
2. 지구별 학술대회
3. 기금관리와 관련된 투자 사업
4. 중, 고등학생들의 수학능력 개발에 관한 사업
5. 중, 고, 대학생들의 멘토링 사업
6. 외국과의 교류 사업

제 42조 (기구)

본 학회는 학술 위원회, 재정위원회를 둔다.

제 43조 (학술위원회)

1. 학술 위원회 의장은 학술 분야 부회장으로 한다.
2. 학술위원은 학술 이사를 포함한 약간 명으로 하되,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3. 학술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4. 학술 위원회는 학술대회와 학술지 편집과 출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1) 학술 위원회 및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2) 논문 투고 및 심사와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
 - 3)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

제 44조 (재정위원회)

1. 재정위원회 의장은 재무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재정위원은 재무 이사를 포함한 약간 명으로 하되,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3. 재정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한다.
4. 재정위원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 1) 학회사업과 재정의 장단기 계획에 관한 사항
 - 2) 찬조회원, 기부금, 보조금 등의 개발에 관한 사항
 - 3) 기타 학회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

제 8장 보칙

제 45조 (정관 변경)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과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 및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6조(해산)

본 학회를 해산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서 출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언어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7조 (해산 법인의 재산 귀속)

본 학회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제 48조 (불신임)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은 당해 선출 회의의 구성원 총수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의결로써 정한다.

제 49조

이 정관의 시행 세칙과 제 규정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 개폐한다.

부칙

본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① 2005년 4월 4일 과학기술부로부터 승인
- ② 2006년 11월 27일 과학기술부로부터 개정 승인
- ③ 2008년 4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개정 승인
- ④ 2009년 7월 20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개정 승인
- ⑤ 2016년 12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개정 승인
- ⑥ 2017년 11월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개정 승인
- ⑦ 2023년 2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개정 승인
- ⑧ 2023년 10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개정 승인